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제 회)	

방 송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 승인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방송법 시행규칙」의 규제일몰 재검토 조항의 유지 필요성이 없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2020.10월 규제개혁위원회 일몰규제 심사결과 반영)

2. 주요내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방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대해 매 3년마다 규제 재검토를 하도록 한 규정 삭제(개정안: 「방송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 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1. 제3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 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2-6544